시간선택제채용직원운용지침

제정 2014.09.11. 개정 2017.02.22. 개정 2023.09.18. [인사부 042-600-817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별정직원 중 시간선택제채용직원에게 적용할 채용, 승급 등 별정직 관리요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간선택제채용직원의 채용, 승급 등에 관하여 별정직관리요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승급이라 함은 하위등급에서 상위등급으로의 임명을 말한다.

제2장 채 용

제4조(채용원칙) 시간선택제채용직원은 표준직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경쟁적 전형방법에 의하여 채용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9.18>

- 1. 법령에 따를 때
- 2. 임용예정직무에 상응한 자격소지자 및 해당직무 경험자를 채용하는 경우로서 공사에 적임자가 없을 때 3. (삭 제)
- 제5조(채용등급) 시간선택제채용직원의 채용은 9등급으로 한다.

제6조(채용 및 전형절차) 채용은 서류, 필기 및 면접의 경쟁적 전형을 통하여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일부 전형을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세부 채용기준은 채용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한다.

제7조(정원) 시간선택제채용직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며 총 근로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09.18>

제3장 복 무

제8조(근무시간) ① 시간선택제채용직원은 상근으로 하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23.09.18>

- 1. 소정근로시간은 1주당 20시간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주당 20시간 또는 주당 35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 2. 근무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연근무제도에 따른 근무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 3. 운영부서장은 시간선택제채용직원에 대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 ② 시간선택제채용직원은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정근로시간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 및 인력운영 상황, 직무 변경 사항 등을 고려하여 보통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인사담당임원이 결정한다.
- ④ 보통인사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차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단, 시간선택제채용직원이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을 추가로 요청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은 유지된다.
- 제9조(근무형태) ① 시간선택제채용직원의 근무형태는 업무공백 방지 및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격일제, 격주제, 격월제는 제한하며 아래의 근무형태를 운영한다.<신설 2023.09.18>
- 1. 매일 특정 시간대 근무
- 제10조(연차휴가) 시간선택제채용직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휴가일수에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한다.<신설 2023.09.18>

제3장 승 급

- 제11조(정기승급) 시간선택제채용직원의 승급은 매년 3월 1일에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승급원칙) ① 시간선택제채용직원의 승급은 근무성적평정, 경력점수,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승급은 최초 9등급에서 1등급으로 순차적으로 행한다.
- ③ 승급은 각 등급별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한다.
- ④ 각 등급별 직하위 등급의 인원이 각 해당등급의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각 해당등급의 정원에 달할 때까지 각 등급에서 직상위 등급으로 승급 및 직상위 등급에서 차상위 등급으로의 승급은 시행하지 아니한다.
- 제13조(등급별 정원) 시간선택제채용직원의 등급별 정원은 직하위 등급 인원의 30%로 하며, 분포율에 따른 인원계산 시 1명 미만은 1명으로 본다. 단, 5등급 이하에서는 등급별 정원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숭급대상) ① 시간선택제채용직원의 승급대상은 당해 등급에서 각각 3년 이상 근무하고, 인사규 정 제27조의 승급 제한이 없는 자를 말한다.
- ② 제1항의 근무기간에는 휴직기간, 강등처분기간, 정직기간, 무보직기간(인사규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경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휴직기간, 공상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 및 고용휴직기간은 이를 포함하다.
- 제15조(승급방법) ① 시간선택제채용직원 4등급 이상으로의 승급은 등급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제11조의 승급대상자에 대하여 승급후보자명부 평가에 의한 순위를 기준으로 인사담당임원이 결정하며, 승급후

보자명부 평가에 있어서 2인 이상의 동점자가 있을 경우 근무성적평정점, 경력점수, 자격증점수 순으로 선순위를 결정한다.

- ② 시간선택제채용직원 5등급까지의 승급은 제11조의 승급대상자에 대하여 최근 2년간 근무성적 평균이 "미"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인사담당임원이 결정한다.
- 제16조(승급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제11조의 승급대상자에 대한 승급후보자명부는 매년 2월말을 기준하여 인사담당부서장이 작성한다.
- ② 시간선택제채용직원 승급후보자명부 평가요소는 별표1과 같다.
- 제17조(근무성적평정) ① 시간선택제채용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업적 및 역량평정으로 한다.<개정 2017.2.22>
- ② 시간선택제채용직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인사평정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17.2.22>
- ③ (삭 제) <개정 2017.2.22.>

제4장 퇴직금

제18조(퇴직금) ① 만 1년 이상 근속한 시간선택제채용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3.09.18>

②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근속기간을 분리하여 보수규정 제22조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며, 근속기간은 1년 당 1개월의 지급률을 곱하여 합산한다. 1년 미만의 잔여 근속월수는 12분의 1개월을 곱하여 월할 계산한다.

<신설 2023.09.18>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3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승급후보자명부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요소	배점	비고
경력점수	20	기본경력:5점, 초과경력:15점
근무성적	70	최근 2년간 근무성적 적용
자 격 증	10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자격증소지자에 대해 적용
계	100	

- 1. 경력점수 계산 시 기본경력은 승급소요 최저연수로 하고, 초과경력 산정은 배점한도(15점) 내에서 기본경력 초과시 1월당 0.25점을 곱하여 산정하며, 월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 2. 근무성적은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균에 0.7을 곱하여 얻은 점수로 한다. 단,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시기의 전 등급 평균성적을 적용한다.
- 3. 자격증 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기술	사무	점수
자격종류	산업기사 이상	인터넷정보관리사 및 컴퓨터활용능력 각 1급, 워드프로세서	10
	기능사	인터넷정보관리사 및 컴퓨터활용능력 각 2급	5

- ※ 자격증 다수 보유 시 상위점수 1개의 자격증만 적용
- ※ 기술직군의 자격증은 해당 직무전공별 국가기술자격법상 다음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종목 적용
 - 기계·금속, 전기·전자·통신, 화공 및 세라믹, 토목, 건축, 정보처리
 - 환경, 에너지, 안전관리, 산업응용(품질관리, 공정관리 분야에 한함)은 공통 적용

소정근로시간 변경 신청서

	구분	현행	변경
변경사항	근무시간(주당)	00시간	00시간
	근무형태	00시부터~00시까지	00시부터~00시까지
	주요업무 (분장업무)		
변경사유			
변경사항 적용기간 (필요시)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지정

20XX년 XX월 XX일

위와 같이 시간선택제채용직원 제8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소속		
직급		
사번		
성명	(인)	

소속부서장		
소속		
직급		
사번		
성명	(인)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